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50 호 2013. 10. 22(화)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2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3년 10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
전문가”를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 이하 및 기능직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지	산림 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 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 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위에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위에,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3.05.06)으로 면접시험 기준을 법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 잦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면접위원에 포함
- 동일직렬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도 “조경기능사” 추가

2. 주요내용

- ‘면접시험기준’ 조항 삭제
 - ‘면접시험기준’을 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위원 위촉관련 제도 개선
- 조경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기능사’ 추가
 -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직류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경’직류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일직렬에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